

# 유권자 권리장전

1. 유효 등록 유권자일 경우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효 등록 유권자란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국 시민 중에서 중대 범죄 판결로 수감 또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지 않고 현 거주지 주소로 등록된 유권자를 의미합니다.
2. 자신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없을 경우 임시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투표소가 문을 닫기 전에 투표소 안에 있었거나 투표소에서 줄을 서고 있었으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위협을 받지 않고 비밀 투표지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투표를 완료하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면 새 투표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언제든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새로운 투표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자 역시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전에 잘못 기표한 본인의 투표지를 선거 관리원에게 반환하고 새로운 투표지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도움을 받지 않고 투표할 수 없으면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기표한 우편 투표지는 카운티 내 어떤 선거구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유권자의 선거구에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수의 주민이 거주한다면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9.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선거 과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 절차에 대해 선거구 위원회와 선거 관리 위원들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얻거나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로 안내되어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질문이 공무 집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선거구 위원회나 선거 관리 위원들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 귀하에게는 불법 또는 부정 선거 행위를 지역 선거 관리원 또는 주 총무처 장관 사무실로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 권리 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 받았다고 여겨지거나 부정 선거 또는 위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주 총무처 장관 유권자 핫라인(866)575-1558로 알려 주십시오. 이 핫라인은 수신자 부담 전화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선거 관리인은 투표 절차에 관한 공식 정보(예: 투표소 위치, 투표지에 표시될 안건 및 후보자)를 발송하기 위하여 귀하의 유권자 등록 진술서상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주 총무처 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식 후보자, 표결법안위원회 또는 각종 선거, 학계, 언론, 정치, 정부 관련 인사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귀하의 유권자 등록 카드상 운전면허 및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유권자 서명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 이용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해당 정보의 오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려는 경우 주 총무처 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연락하십시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유권자들의 경우 유권자 등록 상태를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 총무처 장관 가정 안전(Secretary of State's Safe at Home) 프로그램 수신자 부담 전화 (877) 322-5227로 문의하거나 [www.sos.ca.gov](http://www.sos.ca.gov)에서 확인하십시오.